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30.

발의자 : 전현희 · 박홍근 · 김정우

김상희 · 윤관석 · 기동민

윤호중 · 이원욱 · 최도자

손혜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“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”을 수립하고 있으나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“지속가능 국가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”에도 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.

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,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“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”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)”을 “(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5년 단위의 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”를 “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</p>	<p>제31조(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 비동력·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
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
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
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
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
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
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
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
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
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
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
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
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
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2조(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
획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
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하
여야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

회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자료

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

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